

의안번호	제2907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7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복지지원과-47522호(2024. 12. 11.)] : 검토의견 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항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해당조항: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항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u>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u>	☐ 해당조항: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항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u>성별,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1769호

가) 예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불임

4. 본문: 불임과 같음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성별,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최 문 숙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3.] [보건복지부령 제92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